

기업의 조세소송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김재영** · 김응길***

<요 약>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이익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기업의 권리 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승소했을 경우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패소했을 경우 조세비용 및 비조세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기업 행위이므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조세행정소송과 신용평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조세행정소송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 여부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의 대응치로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adjGAAP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adjCASHETR*)을 사용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조세소송 기업은 경향점수대응법(*Propensity Matching Score*)으로 선정된 대응기업에 비해 KIS 신용평점이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 그 중에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취하는 표본은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조세소송과 신용평점 사이에 음(-)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조세소송이 신용평점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조세회피가 공격적이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에 차별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조세 당국을 대상으로 한 조세소송과 불복청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기업들의 지나친 조세회피와 조세소송 활동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조세회피 조세소송, 신용평점, 신용평가

* 본 논문의 개선에 여러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jenjykim@korea.ac.kr, 주저자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egilkim@ssu.ac.kr, 교신저자

I. 서 론

본 논문은 조세불복소송과 신용평가의 관계를 알아본다. 조세소송중인 기업들의 신용평점이 소송중이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조세소송의 여부가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 포상 등의 정책을 활용한다. 세무조사의 결과로 기업이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해야한다면 기업은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복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복청구 및 조세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양면의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구 등 (2008)에서 언급했듯 부당하게 기업들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유용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세행정소송이 의미를 가진다. 반면, 기업들은 과도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불복청구 및 조세행정소송을 악용할 수도 있다.¹⁾ Hanlon and Slemrod(2009)는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조세전략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업가치가 하락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수록 세무조사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1) “고정사업장, 국내에서 돈은 벌었지만 사업장은 없다? ‘과세 타당 판결’”

… 필리핀 소재 원고 H사는 호텔·레저 및 유통업으로 유명한 홍콩소재 글로벌 기업 G사의 관계회사로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일명 ‘정켓’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 와중 국내 카지노 사업자인 K와 정켓계약을 체결해 고객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수백억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한·필리핀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의 끈질긴 조사끝에 H사는 K사로부터 카지노 건물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받고 일정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카지노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음이 확인됐다.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수백억원의 세금을 과세했고, H사는 해당 사무실이 단순 업무만 하기 위한 장소로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장기간의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1심에서는 국내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지만, 다시 2심에서는 대형로펌을 선임한 원고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려 국세청이 패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외국법인인 H사 뿐만 아니라 H사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국내 카지노 K사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물어 가산세 등을 과세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략적으로 H사와의 소송전 보다 먼저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2심 패소로 불리해지던 K사와의 소송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했고, 끝내 3심에서 다시 한 번 전심을 뒤집고 국가 승소하면서 지난했던 소송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이 고질적으로 고정사업장 과세논리를 악용해 국부를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소송 결과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쟁점의 소송사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세정신문, 2016.11.07. “국세청, 불복청구? … ‘정당 과세는 지켜낸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3887

한다(Mills and Sansing 2000). 김응길 등 (2016)에서는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 중 조세전력이 일관적이지 않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실증했다.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차입금(회사채를 통한 단기 혹은 장기 차입금)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 회사채 발행 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를 위해 신용평가 기관은 회사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신용평가는 채권발행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토대로, 계열관계 및 소속 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무보증회사채, 기업어음 등에 대해서는 채권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²⁾ 신용평가 지수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적정수준의 부채 조달비용 예측을 통해 자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평가는 투자자와 차입금을 조달하려는 기업 사이에 이정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신용평가 기관은 자본시장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업 분석가의 역할과 정보중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조세행정소송의 의미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행정소송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먼저 조세행정소송은 현금흐름 및 기업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지의 여부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조세소송이 승소를 할 경우, 경정을 통해 조세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현금흐름의 증가를 통해 기업의 레버리지를 낮춰 정부에 귀속될 재원의 일부를 주주에게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의 부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Desai and Dharmapala 2006 ; Graham and Tucker 2006). 반면, 조세소송을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는 기업의 리스크를 높이는 부정적인 행위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조세회피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선행연구들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통해 기업가치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고(Desai and Dharmapala 2006), 지나친 조세회피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높이며, 이익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한다(Mills 1998 ; Badertscher et al. 2009 ; Hanlon 2005 ; 고종권과 윤성수 2006).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납은 기업의 현금유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세소송에 패소할 경우 기업 명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조세불복행위는 기업에 비조세비용(non-tax cost)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조세행정소송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반면, 납세자의 적극적인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신용평가와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회계정보 및 세무정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Desai

2)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https://www.kisrating.com/business/creditrating.do>)

and Dhamapala 2009 ; 고윤성 등 2007 ; 이병산과 정재현 2008 ; 강정연과 김영철 2012 ; 김응길, 김재영, 이만우 2016 ; 박종일과 지승민 2016). 이들 연구에서는 기업의 세무전략은 세무비용(tax cost)를 줄여 현금 유출을 감소시켜 현금흐름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지나친 조세회피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가능성과 기업 명성하락 등의 비세무비용(non-tax cost)를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한다(Graham et al. 2014). 이와 같이 조세전략과 신용평가 및 자본시장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및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적극적 조세전략의 하나인 조세행정소송과 신용평가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가 많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소송이 가지는 양면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행정소송 활동이 신용평가 등급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조세행정소송의 영향을 기업의 조세회피 활동 측면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사례는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의 일환으로 조세불복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세불복 소송 급증에 과세당국 전면전 선포”, 2015.03.20., 문화일보

『대형 법무법인(로펌)까지 동원된 지능적이고, 액수마저 점점 높아지는 조세 회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을 정식 발족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중략...

이는 자칫 4년 연속 세수 핑크 사태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능형 탈세와 금융, 국제거래, 합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복이 계속 늘고 있는 데 따른 강도 높은 대응조치에 속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로펌·세무법인 대형화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2009년 1258건, 1조1098억 원 규모이던 국세 분야 과세 불복 행정소송이 지난해에는 무려 1957건, 5조568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다국적 기업의 불복이 늘어남에 따라 본청 및 각 일선 세관에 전문가 중심의 ‘특별쟁송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³⁾

위 사례는 개인 및 기업의 조세 불복이 과거보다 급증하는 현상을 보고한다. 특히, 일선 기업에 대한 조세 불복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불복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세불복 행위는 로펌과 세무법인의 성장과 기업의 조세전략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다. 다시 말해, 조세 불복과 관련 소송 행위의 증가가 기업의 공격적(적극적)조세전략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세회피 활동 성향이 높은 기업은 조세행정소송 또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여겨 이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활

3) 웹사이트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32001031903016001>

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조세와 관련한 소송이나 불복청구 등이 진행되는 기업의 조세전략은 그러하지 않는 기업보다 보다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조세행정소송 기업들과 신용평가의 관계가 차별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 기업의 조세행정소송은 신용평점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재무보고 품질의 악화와 회계투명성의 저하 등 조세회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도, 산업별 기준으로 측정한 조세회피 수준이 조세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조세행정소송 기업들의 경우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소송 기업에 비해 신용평점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조세행정소송이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와 자본시장 및 차입금조달의 반응을 본 여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조세소송에 초점을 맞춰 차입금 조달의 중요한 요소인 신용평점에 조세소송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했다. 권순창 등(2009)은 보고이익차이(Book-tax-difference, BTD)와 일시적 차이가 이익지속성과 이익조정 정도와 연계되어 KIS 신용평점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본 연구는 권순창 등(2009)의 연구와 달리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의 조세소송에 초점을 맞춰 신용평점에 차별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조세행정소송, 불복청구 등의 자료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활용했다. 조세소송 등의 활동은 기업에 대한 과다 혹은 부당한 징수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위 사례에서 나타났듯 기업의 조세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활동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조세 불복 및 소송 행위의 의미를 조세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응길 등(2016)은 조세소송이 조세회피와 역의 관계가 있으므로 평균적인 관점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순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조세행정소송과 신용평점의 연관성을 기업 외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고찰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신용평가제도와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가설을 수립한다. 제Ⅳ장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표본 구성과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에 대한 선정 과정을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및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Ⅵ장에서 전체적인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신용등급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을 통해 신용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특히 신용등급은 평가대상 기업과의 장기적 계약이나 관계기관으로 부터의 강제성등을 통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분석가는 피평가기업의 이해 관계등의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여지가 높다 (Baker and Mansi 2002).

신용등급에 대한 결정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Kalpan and Urwitz(1979)는 기업의 현금흐름 정보, 채무정보, 이익 정보와 시장 베타 등의 재무정보가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나영과 전동민(2002)은 배당률과 총자산과 같은 재무정보를 기초로 한 신용등급 예측치가 실제 신용등급과 높은 일치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조은혜(2016)는 내부자 매도거래가 많을수록 여신기관에서 기업의 미래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다. 이익의 질 측면과 연관하여 정보불확실성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도 있다(Prevost et al. 2008 ; 박연희 등 2011). 지배구조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Ashbaugh et al.(2006)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규모와 독립성이 신용등급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으며, 박종일, 남혜정, 최성호(2011)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Big4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실증했다. 저자들은 신용평가기관이 Big 4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의 질이 높다고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추가로 높인다고 주장한다(박종일 등 2011).

이처럼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조세소송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먼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비롯한 세무정보의 특성과 신용평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조세소송의 효과를 예측해본다. 세무정보를 중심으로 신용평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전략이나 세무관련 정보가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혹은 긍정적인 영향의 여부를 살펴보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회피의 신용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Crabtree and Maher(2009)는 채권발행시 보고이익 차이(BTD)가 클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권순창 등(2009)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했다. 저자들은 특히 일시적 차이가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했다. 박종일과 지승민(2016)은 세무보고의 공격성에 초점을 두고 회사채 신용등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세무 보고의 공격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이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광숙과 기은선(2016)은 세무조사 추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비조세비용에 관해 분석했

다.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저자들은 장기세무조사 표본에서 신용평가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실증했다. Kim et al.(2011)은 경영자가 부정적인 투자안에 대한 나쁜 소식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즉, 조세전략은 고유의 복잡성과 접근 제한성으로 인해 쉽게 공개될 수 없으므로 이를 악용한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증가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1975년에서 2000년까지 44개의 조세피난처(tax shelter)를 활용한 4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Graham and Tucker(2006)의 연구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음을 보임으로써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전략이 기업의 부채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 따라서 의도적인 조세전략은 기업과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상이하게 조세회피의 신용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 문예영·전병욱·최보람(2011)은 이월결손금과 보고이익 차이가 신용등급, 신용평점 및 재무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신용평점에 관해 저자들은 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신용평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조세회피로 인한 절세효과가 반전효과에 비해 크다고 해석했다. 신용평가와는 직결되지 않지만, 은행 차입이자율과 연결하여 Kim et al.(2010)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업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은행의 특성 때문에 조세회피로 인한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현욱과 변선영(2016)은 조세혜택을 활용해 조세혜택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다. 김응길 등(2016)은 조세소송기업들의 조세회피수준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실증했다. 하지만 조세전략의 일관성이 낮을 경우 조세소송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Lim(2011)은 조세회피가 타인자본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며,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와 타인자본 비용 간 음(-)의 관계는 더욱 강해짐을 실증했다.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Edwards et al.(2013)은 조세회피가 납부세액의 절감을 가져오므로 잉여현금흐름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자금의 내부조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영의사결정의 하나인 조세소송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구성원의 성실납세 및 불법 조세회피를 유도하도록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와 이를 통한 처벌 포상등의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다. 하지만 때로는 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부담을 가지기도 하는데 경영자는 이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복청구 및 조세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유인을 가진다. 기업이 조세소송을 승소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패소했을 경우 가산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기업 명성의 훼손 등의 비세금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소송은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다.

4) Graham and Tucker (2006)의 연구에서는 통제기업군과 비교하여 부채비율이 약 8%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하며, 총자산의 약 9%가 법인세액에서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주가반응을 통해 기업의 소송에 관한 불확실성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했다(Bhagat et al. 1994 ; 박종일과 신재용 2014 ; 정운오와 전병욱 2012). Bhagat et al.(1994)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피소송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피소송 기업의 하락한 기업가치가 다시 회복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정운오와 전병욱(2012)은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음(-)의 주가반응이 있는 후,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양(+)의 주가반응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박종일과 신재용(2014)에서는 소송발생여부에 따라 기업의 자본비용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재현(2011)은 조세소송은 적극적인 세무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경영자의 미래 세무전략에 관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자면, 조세행정소송은 신용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조세소송은 본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거친 후에도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조세 처분에 대한 의견이 대립될 때,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소송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징수에 대해 의견을 소명할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길 등(2016)은 조세행정소송 기업들 중 조세전략의 일관성이 높을 경우 오히려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제시했다. 이것은 부당한 조세비용에 대응하고자 기업들이 조세행정소송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조세행정소송도 기업의 의사결정의 한 측면이다(정재현 2011). 부당한 조세비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조세행정소송 중 경정청구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기업은 현금흐름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내부 자본조달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성공적인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현금흐름의 증가를 통해 기업의 채무이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정부 재원 중 일부를 주주의 부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Francis et al. 2005 ; Desai and Dharmapala 2006 ; Graham and Tucker 2006). 이처럼 증가된 기업 가치는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게 되며 장기적으로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세행정소송을 지나친 조세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기업의 리스크를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조세회피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가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업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Desai and Dharmapala 2006),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높이며, 이익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바라봤다(Mills 1998 ; Badertscher et al. 2009 ; Hanlon 2005 ; 고종권와 윤성수 2006). 조세행정소송에 대한 비조세비용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Graham et al.(2014)는 지나친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의 명성하락 등의 비조세 비용을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고려한다고 제시했다. 조세당국과의 갈등, 행정소송에 수반되는 비용, 패소했을 경우의 부담은 기업의 효율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기업 명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신용분석가는 조세불복소송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기업의 조세소송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기업의 조세소송은 신용평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조세행정소송의 신용평가에 대한 효과가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같이 신용평점에 대한 조세회피의 효과는 양면적일 수 있다. 조세회피는 회계정보 등 기업 정보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Kim et al. 2011)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기업의 사회적 명성 하락 등 비조세 비용의 문제가 증가될 수 있다(Graham et al. 2014). 반면 조세회피를 통해 절세효과로 인한 현금흐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 행정소송으로 인한 영향 또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설 2를 통해 조세전략과 조세 행정소송의 상호작용이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조세회피 수준이 강한 기업이라면 조세비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지배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조세회피 수준이 강한 기업은 조세행정 소송을 조세회피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신용평가사는 조세회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세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명성하락과 패소 가능성 등 비용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라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징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조세행정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조세소송의 패소로 인한 명성하락, 현금흐름의 불안정성과 같은 비용 측면 보다는 현금흐름 개선에 대한 효익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 조세회피 수준은 조세소송과 신용평점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모형 및 표본 선정

1. 조세행정소송 표본과 대응 표본의 선정

본 논문은 조세행정소송이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소송을 하는 기업과 비소송기업의 표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

스닥 시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세행정소송 기업의 표본을 수집했다.⁵⁾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의 항목 중 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쟁송’, ‘법인세’, ‘세무소송’, ‘조세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검색어를 활용해 총 271(기업/년도)를 수집했다. 그 중 통제변수를 활용할 수 없는 표본인 6(기업/년도)개를 제외하고, 5개년 동안 이연법인세 등 세무관련 변수가 결측이어서 조세회피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70(기업/년도) 표본을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점을 추출할 수 없는 4(기업/년도)개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191(기업/년도) 표본의 조세소송 기업을 연구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표 1〉 표본 선정 과정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수집된 조세행정소송 기업	271
통제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6)
조세회피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70)
신용평점을 추출할 수 없는 경우	(4)
조세행정소송 표본	191
경향점수 대응으로 구성한 대응표본 (2 : 1 대응)	382
총 표본 (기업/년도)	573

조세소송 표본과 비소송 표본의 표본크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며⁶⁾, 조세 소송이나 세무조사 등의 사건이 회귀모형에 포함된 다른 기업특성들과 내생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형(1)을 로지스틱 분석하여 경향점수대응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2 : 1 대응표본을 구성한다.

모형(1)에 활용된 변수는 가설 검증 모형(3), (4)에서 활용된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조세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⁷⁾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ln MV$)은 기업 규모를 대응하기 위해 대입하였다. 이월결손금(NOL)은 직접적인 추출이 어렵다. 그러므로 과거 3년 동안 이익잉여금이 음(-)인 연도가 있을 경우,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손금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조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 <http://glaw.scourt.go.kr/wsjo/>

6) 각 사건의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국세청에 대한 조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91건이다. 모형(5)를 활용하여 대응표본이 2 : 1로 선정되었고 각 사건의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191(기업/년도)와 382(기업/년도)이다.

7) 모형(1)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직접적인 조세부담은 낮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조세전략의 변동성(*Std_CETR*)은 조세회피에 따른 비용인 세무위험과 미래 법인세 납부액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Guenther et al.(2013)은 과거 5년간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은 증가하고 미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Frank et al.(2009)은 발생액 이익조정을 하는 기업이 동시에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을 활용하여 재량적 발생액(*DA*)을 추정하였다. 기타 총자산 성장률(*GRW*), 부채비율(*LEV*),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비율(*CFOR*), 총자산 수익률(*ROA*)은 2단계 실증 회귀분석에 활용된 통제변수들이 활용되었다.

$$Legal_{it}(Add_{it}) = \beta_0 + \beta_1 LnMV_{it} + \beta_2 NOL_{it} + \beta_3 Std_CETR_{it} + \beta_4 DA_{it} + \beta_5 GRW_{it} + \beta_6 LEV_{it} + \beta_7 CFOR_{it} + \beta_8 ROA_{it} + \epsilon \quad (1)$$

Legal : 기업의 조세 소송, 경정청구 및 이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이 있는 경우 1, 아니면 0,

Add :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납액이 있는 경우 1, 아니면 0,

LnMV :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

NOL : 과거 3년 동안 이익잉여금이 0보다 작은 연도가 있을 경우 1, 아니면 0,

Std_CETR : 조세전략의 변동성(과거 5년 동안의 현금유효법인세율의 표준편차),

DA : 수정 Jones모형으로 산출된 재량적 발생액

GRW : 총자산 성장률 (= (기말총자산 - 기초총자산) / 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 (= 총부채 / 기초총자산),

CFOR :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ROA : 총자산수익률 (=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Parameter	Estimate (Chi-Square)
<i>Intercept</i>	-15.1500 (217.5103)***
<i>SIZE</i>	0.4023 (109.7605)***
<i>NOL</i>	0.7767 (3.2346)*
<i>STD_CETR</i>	0.6580 (4.8586)**
<i>DA</i>	1.0666 (1.6449)
<i>GRWA</i>	-0.3752 (2.6790)
<i>LEV</i>	0.6494 (3.4518)*
<i>CFOR</i>	-0.1517 (0.0258)
<i>ROA</i>	-1.5392 (0.7708)
N	14,466
Likelihood Ratio	134.5544***

2. 신용등급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신용등급의 대용치로 KIS신용평가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KIS 신용평가점수는 영업위험과 산업위험 및 재무구조 위험을 토대로 산출한다. 영업위험은 기업의 영업전략, 사업구조, 기술력, 경영진의 특성 및 지배구조와 같은 요소로 평가되며, 산업위험은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특성이나 경쟁구조, 성장성, 경기변동과 정책위험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된다. 재무요소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현금흐름, 우발채무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평가되며, 무엇보다도 분식회계와 조세에 관한 사항도 고려된다. 즉, 분식회계 등 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⁸⁾

3. 조세회피의 측정

본 논문의 가설 2 검증을 위한 주요 관심변수인 조세회피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유효법인세율(이하 *GAAPETR*)을 구했다. 하지만 *GAAPETR*은 평가충당금, 법인세준비금 등의 비세무전략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분자로 활용한 법인세 비용은 당기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비용이 포함되어 이연법인세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별도로 분리해 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측정치이다. 현금유효법인세율(이하 *CASHETR*)은 실제 법인세납부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실제 조세 부담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하지만 분자로 활용한 법인세 납부액은 당기 법인세를 비롯한 다른 기간의 세액 또한 포함되는 반면 분모로 활용한 세전이익은 당기의 정보만 포함하고 있어 비대칭적일 수 있다(Dyrenge et al. 2008).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GAAPETR*과 *CASHETR*의 시차에 따른 문제(time bias)를 완화하고자 다음의 모형(1)과 같이 5년간 누적하여 활용한다. 한편 *GAAPETR*과 *CASHETR*은 값이 작을수록 조세회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김응길 등 2016).

$$GAAPETR(or\ CASHETR) = \frac{\sum_{t=1}^5 (\text{법인세비용 or 법인세납부액})}{\sum_{t=1}^5 \text{세 전 이 익}} \quad (2)$$

한편 Balakrishnan et al.(2011)은 각 기업의 상대적인 조세회피 수준을 나타남에 있어 *ETR*이

8) 본 논문은 신용평가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의 관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신용평가의 과정이 신용평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주석 8)’에서 제시한 것처럼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충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과 규모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의 비정상적 조세회피(이하 *adjGETR*, *adjCETR*)를 활용하고자 한다. *adjGAAPETR* 및 *adjCASHETR*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김응길외 2016)에서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산업과 규모에 따라 *GAAPETR*과 *CASHETR*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산출된 평균값에서 개별 기업의 *GAAPETR*과 *CASHETR*을 차감하여 *adjGETR* 및 *adjCETR*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adjGETR* 및 *adjCETR*은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4. 가설검증을 위한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모형 (3)과 모형 (4)를 구성하고 회귀분석 한다. 종속변수는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신용평점을 활용한다.⁹⁾ 주요 관심변수는 조세소송 더미변수(*LIT*)이다. 또한 가설(2) 검증을 위한 *adjGAAPETR*, *adjCASHETR*의 조세회피 변수다.

모형에 활용된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LEV*)은 기업의 채무불이행가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CFO*)은 채무이행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 값이 높을수록 채무이행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신용평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김태정 등 2003). 총자산성장률(*Growth*), 영업손실 더미(*LOSS*) 및 총자산 수익률(*ROA*)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나

9) 다음은 한국신용평가(주)의 신용평가 평점과 등급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다.

점수	등급	신용등급의 정의
10	A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 등급이고,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9	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8	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7	B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 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있는 기업
6	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5	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 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높은 기업
4	C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3	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2	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1	D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타낸다. 재무성과가 양호할수록 채무이행가능성이 높고 신용평점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조현우·박연희 2006 ; 전성일·이기세 2010).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을 활용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호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채무이행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용평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타 생략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형에 도입하였다.

$$Credit_{it+1} = \alpha_0 + \alpha_1 LIT_{it} + \alpha_2 SIZE_{it} + \alpha_3 GRW_{it} + \alpha_4 LEV_{it} + \alpha_5 CFOR_{it} + \alpha_6 ROA_{it} + \alpha_7 LOSS_{it} + \alpha_8 PMDA_{it} + \Sigma YEAR + \Sigma IND + \epsilon \quad (3)$$

$$Credit_{it+1} = \beta_0 + \beta_1 TAX_Avoid_{it} + \beta_2 LIT_{it} * TAX_Avoid_{it} + \beta_3 LIT_{it} + \beta_4 SIZE_{it} + \beta_5 GRW_{it} + \beta_6 LEV_{it} + \beta_7 CFOR_{it} + \beta_8 ROA_{it} + \beta_9 LOSS_{it} + \beta_{10} PMDA_{it} + \Sigma YEAR + \Sigma IND + \epsilon \quad (4)$$

- Credit* : KIS 신용평점(1점~10점, 양호할수록 10점), 차년도의 신용평점을 활용함
TAX_Avoid : 조세회피 변수(*adjGAAPETR*, *adjCASHETR*),
LIT : 조세소송기업이면 1, 아니면 0,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GRW : 총자산 성장률 (= (기말총자산 - 기초총자산) / 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 (= 총부채/기초총자산),
CFOR :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 : 총자산수익률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SS : 당기 순손실이면 1, 아니면 0,
PMDA :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 수정Jones 모형을 통해 산출한 재량적 발생액을 산업·연도별 총자산 기준 5분위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차감한 값),
YD : 연도더미 변수,
IND : 산업더미 변수

5. 표본의 구성

신용평점에 따른 표본 구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표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 중 결산월이 12월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원래 데이터 상의 신용평점은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점수를 나타내나 본 논문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11에서 차감하여 재구성했다. 즉, 1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기업임을 나타낸다. 표본 분포를 살펴보면, 소송 표본의 약 36.6%는 신용평점이 5점 이하이다. 반면 비소송 대응 표본의 경우 약 29.8%의 표본이 5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즉, 표본의 분포로 보자면, 소송 표본의 신용평점이 비소송 대응 표본의 신용평점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신용등급에 따른 표본의 분포

신용등급	소송 표본 (N=191)	비소송 대응 표본 (N=382)
1	1	2
2	1	0
3	9	18
4	21	38
5	38	56
6	60	80
7	24	86
8	18	56
9	18	44
10	1	2

IV.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표 3>은 실증분석에 활용된 전체 표본과 소송 표본 및 비소송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전체 표본의 신용평점(*CREDIT*)은 평균 약 6.25점을 나타내고 있다. 소송 표본의 신용평점 평균은 6.010으로 비소송 표본의 신용평점 평균 6.372에 비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세 회피 변수를 살펴보면 전체표본의 산업·규모조정 유효현금법인세율(*adjCETR*)은 약 0.006을 나타낸다. 소송 표본의 산업·규모조정 유효현금법인세율(*adjCETR*)의 평균은 약 0.034로 비소송 표본의 평균값인 -0.007보다 크다. 전체표본의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adjGETR*)의 평균은 -0.001이다. 소송 표본의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adjGETR*)은 0.023으로, 비소송 표본의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adjGETR*)의 평균인 -0.01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활용한 유효세율 변수는 산업 평균 값에서 개별기업의 수치를 차감하였으므로 그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송 표본의 조세회피 정도가 비소송 표본의 조세회피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는 소송 표본의 대응표본(control sample)을 구성할 때, 동종 산업과 연도에 속한 비소송 표본 중 기업 규모가 가장 유사한 두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GRW* 변수는 전체표본의 평균값이 0.133이고 소송표본의 성장성이 비소송 표본의 성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LEV*)과 당기순

실(LOSS) 또한 소송 표본의 평균이 비소송 표본의 평균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송기업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PMDA)는 비소송 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변수	표본크기	평균	25%	50%	75%	표준편차	
[전체 표본]							
CREDIT	573	6.251	5.000	6.000	7.000	1.693	
adjCETR		0.006	-0.063	-0.002	0.065	0.115	
adjGETR		-0.001	-0.066	0.000	0.045	0.110	
LIT		0.333	0.000	0.000	1.000	0.472	
SIZE		26.840	25.591	26.403	27.689	1.643	
GRW		0.133	0.022	0.085	0.177	0.198	
LEV		0.521	0.346	0.523	0.679	0.261	
CFOR		0.072	0.012	0.060	0.119	0.100	
ROA		0.055	0.021	0.047	0.076	0.043	
LOSS		0.016	0.000	0.000	0.000	0.124	
PMDA		0.009	-0.035	0.012	0.051	0.087	
[소송 표본]							
CREDIT	191	6.010	5.000	6.000	7.000	1.651	
adjCETR		0.034	-0.033	0.013	0.101	0.119	
adjGETR		0.023	-0.043	0.016	0.087	0.118	
SIZE		26.823	25.591	26.663	27.629	1.517	
GRW		0.145	0.022	0.094	0.195	0.208	
LEV		0.539	0.381	0.514	0.680	0.239	
CFOR		0.076	0.014	0.071	0.123	0.096	
ROA		0.053	0.022	0.047	0.073	0.043	
LOSS		0.037	0.000	0.000	0.000	0.188	
PMDA		0.018	-0.028	0.018	0.065	0.086	
[비소송 표본]							
CREDIT		382	6.372	5.000	6.000	8.000	1.703
adjCETR	-0.007		-0.068	-0.016	0.043	0.110	
adjGETR	-0.013		-0.083	-0.003	0.031	0.104	
SIZE	26.849		25.591	26.354	27.744	1.704	
GRW	0.126		0.022	0.077	0.164	0.193	
LEV	0.512		0.294	0.526	0.679	0.270	
CFOR	0.071		0.011	0.056	0.113	0.101	
ROA	0.056		0.020	0.047	0.078	0.043	
LOSS	0.005		0.000	0.000	0.000	0.072	
PMDA	0.004		-0.038	0.009	0.047	0.088	

Credit : KIS 신용평점(0점~10점, 양호할수록 10점),
adjGETR : 산업·규모 조정 유효법인세율,
adjCETR : 산업·규모 조정 현금유효법인세율,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GRW : 총자산 성장률 ($= (\text{기말총자산} - \text{기초총자산}) / \text{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 ($= \text{총부채} / \text{기초총자산}$),
CFO :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 : 총자산수익률 ($= \text{당기순이익} / \text{기초총자산}$),
LOSS : 당기 순손실이면 1, 아니면 0,
PMDA :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을 연도·산업별 총자산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어 각분위의 중위수를 차감한 값)

<표 4>는 주요변수에 대한 비소송 그룹과 소송 그룹 사이의 차이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신용평점(*CREDIT*)은 소송 그룹이 비소송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송 그룹의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신용평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효법인세율은 모두 소송 그룹이 비소송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송 그룹의 조세회피 정도가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로 활용된 규모(*SIZE*), 총자산 성장률(*GRW*), 부채비율(*LEV*),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비율(*CFOR*) 및 총자산이익률(*ROA*) 모두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PMDA*)은 소송 그룹이 비소송 그룹에 비해 10% 수준에서 유의한 큰 값을 나타냈다.

〈표 4〉 차이 분석

변 수	평 균 값			차이분석	
	비소송 그룹	소송 그룹	차이	모수검정	비모수검정
<i>CREDIT</i>	6.371	6.010	0.361	2.42**	2.715***
<i>adjCETR</i>	-0.007	0.034	-0.041	-4.13***	-4.364***
<i>adjGETR</i>	-0.012	0.023	-0.035	-3.72***	-4.184***
<i>SIZE</i>	26.848	26.822	0.026	0.18	0.504
<i>GRW</i>	0.126	0.145	-0.018	-1.08	-1.227
<i>LEV</i>	0.512	0.539	-0.026	-1.21	-1.131
<i>CFOR</i>	0.070	0.076	-0.005	-0.66	-1.066
<i>ROA</i>	0.055	0.052	0.003	0.78	0.768
<i>PMDA</i>	0.004	0.017	-0.013	-1.74*	-1.956*

1)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2)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표 5>는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값을 나타낸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i>adjCETR</i>	<i>adjGETR</i>	<i>adjCETR</i> * <i>LIT</i>	<i>adjGETR</i> * <i>LIT</i>	<i>LIT</i>	<i>SIZE</i>	<i>GRW</i>	<i>LEV</i>	<i>CFOR</i>	<i>ROA</i>	<i>LOSS</i>	<i>PMDA</i>
<i>CREDIT</i>	-0.041	-0.011	-0.048	-0.061	-0.100**	0.015	-0.103**	-0.582***	0.447***	0.463***	-0.068	0.278***
<i>adjCETR</i>	1.000	0.684***	0.361***	0.622***	0.170***	-0.023	-0.083**	-0.019	0.034	-0.044	0.173***	0.046
<i>adjGETR</i>	1.000	1.000	0.632***	0.373***	0.153***	0.025	-0.099**	-0.051	-0.019	-0.037	0.253***	0.004
<i>adjGETR</i> * <i>LIT</i>	1.000	1.000	1.000	0.578***	0.159***	-0.039	-0.037	-0.024	0.016	-0.046	0.267***	0.033
<i>adjCETR</i> * <i>LIT</i>	1.000	1.000	1.000	0.227***	0.227***	-0.041	0.014	0.020	0.075*	-0.084**	0.154***	0.075**
<i>LIT</i>	1.000	1.000	1.000	1.000	1.000	-0.007	0.045	0.048	0.027	-0.032	0.119***	0.071*
<i>SIZE</i>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51	0.062	0.129***	-0.016	-0.034	0.209***
<i>GRW</i>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78***	0.120***	0.136***	-0.006	-0.069*
<i>LEV</i>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30	-0.196***	0.002	-0.089**
<i>CFOR</i>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29***	-0.061	0.697***
<i>ROA</i>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76***	0.147***
<i>LOSS</i>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39

1) *LIT* : 조세소송 표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기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2) 상관계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냄

3)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종속변인으로 활용한 신용평점(*CREDIT*)과 주요 관심변수인 소송기업 더미변수(*LIT*)의 상관계수는 -0.100 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즉 소송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용평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조세소송 여부가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조세소송 더미변수와 조세회피 변수 사이에 상호작용항을 구성하고(*adjGETR*LIT*, *adjCETR*LIT*)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했다. 먼저 조세회피 변수들과 신용평점의 상관관계는 음(-)의 값을 나타내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두 상호작용항과 신용평점은 모두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기타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의 값을 나타내므로 추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차이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조세소송 더미변수와 조세회피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즉, 조세소송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세소송 변수(*LIT*)와 기타 통제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으나, 당기순손실 더미변수(*LOSS*)와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PMDA*)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6>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3)의 순위 프로빗 (Ordered probit)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설 1은 조세소송이 신용평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한 가설이다. 주요 관심변수인 조세소송(*LIT*) 변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즉, 소송 기업일 경우 비소송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평점이 낮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용평점 산출에 있어서 조세행정소송 기업들의 소송비용과 소송 결과의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승소로 인한 현금 유입액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높게 평가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SIZE*)는 모형 설정 단계에서 신용평점과 양(+)의 관계를 예상했다. 실증 분석 결과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GRW*는 예상과 같이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어 신용평점을 높이는 관계를 보인다. 부채비율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도출되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비율(*CFOR*)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 즉,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높을수록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신용평점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다. 당기순손실 변수는 음(-)의 값을 나타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가 검증되어 이익조정과 신용평점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6〉 회귀분석1 : 조세소송여부와 신용평점의 관계

Parameter	Prediction	Estimate (t Value)
<i>Intercept</i>		7.087 (4.72)***
<i>LIT</i>	?	-0.218 (-1.97)**
<i>SIZE</i>	+	0.139 (3.54)***
<i>GRW</i>	+	3.157 (10.14)***
<i>LEV</i>	-	-7.247 (-19.41)***
<i>CFOR</i>	+	1.476 (1.65)*
<i>ROA</i>	+	8.714 (5.80)***
<i>LOSS</i>	-	-0.325 (-0.87)
<i>PMDA</i>	-	2.681 (2.77)***
<i>YD & IND</i>		Included
N		573
Pseudo-R ²		0.3284

1) 위 표는 조세소송여부와 신용평점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 모형을 활용한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redit_{it} = \alpha_0 + \alpha_1 TAX_Avoid_{it} + \alpha_2 SIZE_{it} + \alpha_3 LEV_{it} + \alpha_4 ROA_{it} + \alpha_5 Growth_{it} + \alpha_6 LOSS_{it} + \alpha_7 CFOR_{it} + \Sigma YEAR + \Sigma IND + \epsilon \quad (3)$$

2) *LIT* : 조세소송 표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기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3)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표 7>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4)의 순위 프로빗 (Ordered probit)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설 2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조세소송에 따라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좌측의 분석은 일반적인 유효법인세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 *adjGETR*의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소송(*LIT*) 변수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조세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조세회피 정도가 강할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유효법인세율을 활용한 우측의 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조세소송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 유효법인세율 모형과 동일하게 조세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는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는 <표 6>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조세소송 기업 중 조세회피가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평점에 상대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6>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자면, 조세소송이 신용평가 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일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가설 2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및 조세회피 수준을 보다 세분화한 추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 7> 회귀분석2 :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조세소송여부가 미치는 영향

Parameter	Prediction	Estimate (t Value)	Estimate (t Value)
<i>Intercept</i>		3.182 (2.70)***	6.219 (4.13)***
<i>adjGETR</i>	?	0.136 (3.55)***	
<i>adjGETR*LIT</i>	—	-1.525 (-2.44)**	
<i>adjCETR</i>	?		0.123 (3.15)***
<i>adjCETR*LIT</i>	—		-2.045 (-3.15)***
<i>LIT</i>	?	-0.250 (-1.15)	-0.380 (-1.68)*
<i>SIZE</i>	+	0.150 (3.85)***	0.157 (3.98)***
<i>GRW</i>	+	2.649 (8.95)***	3.064 (9.79)***
<i>LEV</i>	—	-6.653 (-18.99)***	-7.323 (-19.44)***
<i>CFOR</i>	+	1.997 (2.28)**	1.682 (1.87)*
<i>ROA</i>	+	9.004 (5.98)***	8.650 (5.71)***
<i>LOSS</i>	—	-0.353 (-0.93)	-0.181 (-0.48)
<i>PMDA</i>	—	1.932 (2.06)**	2.214 (2.27)**
<i>YD&IND</i>		Included	Included
N		573	573
Pseudo-R ²		0.3393	0.3636

1) 위 표는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조세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 모형을 활용한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redit_{it} = \alpha_0 + \alpha_1 TAX_Avoid_{it} + \alpha_2 Agrdum* TAX_Avoid_{it} + \alpha_3 Agrdum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LEV_{it} + \alpha_6 ROA_{it} + \alpha_7 Growth_{it} + \alpha_8 LOSS_{it} + \alpha_9 CFO_{it} + \Sigma YEAR + \Sigma IND + \epsilon \quad (4)$$

2) *TAX_Avoid* : 조세회피 수준

LIT : 조세소송 표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기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3)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3. 추가분석 결과

<표 8>은 대응표본을 다양한 비율로 구성하여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7>에서 활용한 표본은 대응표본을 2 : 1로 구성하였으나, 실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1 : 1 및 3 :

1로 구성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1 : 1 대응표본의 분석 결과 일반 유효법인세율과 조세소송의 상호작용항은 10% 수준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2 : 1 대응 표본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현금 유효법인세율과 조세소송의 상호작용항 또한 신용평점의 변화분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다. 대응표본을 3배수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 유효법인세율과 조세소송의 상호작용항은 5% 수준의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현금 유효법인세율과 조세소송의 상호작용항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표 7>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추가분석1 : 대응 표본 구성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

Parameter	Prediction	Estimate (t Value)	Estimate (t Value)
<1 : 1 매칭>			
<i>Intercept</i>		4.405 (3.03)***	4.710 (3.22)***
<i>adjGETR</i>	?	1.386 (1.73)*	
<i>adjGETR*LIT</i>	—	-1.725 (-1.71)*	
<i>adjCETR</i>	?		-0.238 (0.95)
<i>adjCETR*LIT</i>	—		-2.009 (-2.31)**
<i>LIT</i>	?	-0.134 (-0.57)	-0.207 (-1.19)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N		382	382
Pseudo-R ²		0.3447	0.3457
<3 : 1 매칭>			
<i>Intercept</i>		3.308 (3.27)***	6.678 (5.24)***
<i>adjGETR</i>	?	0.100 (4.27)***	
<i>adjGETR*LIT</i>	—	-0.884 (-2.08)**	
<i>adjCETR</i>	?		0.921 (3.82)***
<i>adjCETR*LIT</i>	—		-1.624 (-3.62)***
<i>LIT</i>	?	-0.089 (-0.44)	-0.363 (-1.71)*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N		764	764
Pseudo-R ²		0.3372	0.3657

1) 위 표는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조세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 모형을 활용한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redit_{it} = \alpha_0 + \alpha_1 TAX_Avoid_{it} + \alpha_2 Agrdum * TAX_Avoid_{it} + \alpha_3 Agrdum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LEV_{it} + \alpha_6 ROA_{it} + \alpha_7 Growth_{it} + \alpha_8 LOSS_{it} + \alpha_9 CFO_{it} + \Sigma YEAR + \Sigma IND + \epsilon \quad (4)$$

2) *TAX_Avoid* : 조세회피 수준

LIT : 조세소송 표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기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3)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표 9>는 지배구조에 따라 조세소송이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지배구조는 조세전략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세전략의 의도가 지배구조의 강건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Desai & Dharmapala 2006 ; 강정연 등 2012 ; 박종국 등 2013 ; 김학열 등 2014). 본 논문은 조세전략의 의도에 따라 조세소송이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조세전략의 의도를 지배구조의 강건성으로 대체하여 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표 9> 추가분석2 : 지배구조의 효과

Parameter	Prediction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주주 지분율>
		Estimate (t Value)	Estimate (t Value)
<i>Intercept</i>		7.094 (4.56) ***	7.131 (4.74) ***
<i>LIT</i>	?	0.027 (0.17)	-0.176 (-1.56)
<i>GOV</i>	?	0.223 (1.57)	0.186 (0.32)
<i>LIT*GOV</i>	—	-0.569 (-2.32) **	-1.081 (-2.27) **
<i>SIZE</i>	+	0.144 (3.40) ***	0.139 (3.52) ***
<i>GRW</i>	+	3.584 (10.21) ***	3.185 (10.21) ***
<i>LEV</i>	—	-7.743 (-18.49) ***	-7.282 (-19.45) ***
<i>CFOR</i>	+	1.715 (1.76) *	1.488 (1.66) *
<i>ROA</i>	+	8.985 (5.67) ***	8.861 (5.89) ***
<i>LOSS</i>	—	-0.107 (-0.28)	-0.342 (-0.91)
<i>PMDA</i>	—	3.406 (3.28) ***	2.750 (2.84) ***
<i>YD & IND</i>		Included	Included
N		573	573
Pseudo-R ²		0.3693	0.3606

1) 위 표는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조세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 모형을 활용한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redit_{it} = \alpha_0 + \alpha_1 TAX_Avoid_{it} + \alpha_2 Agrdum * TAX_Avoid_{it} + \alpha_3 Agrdum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LEV_{it} + \alpha_6 ROA_{it} + \alpha_7 Growth_{it} + \alpha_8 LOSS_{it} + \alpha_9 CFO_{it} + \Sigma YEAR + \Sigma IND + \epsilon \quad (4)$$

2) *BAD GROUP* : 조세회피 상위 25% 그룹 더미, *GOOD GROUP* : 조세회피 하위 25% 그룹 더미
TAX_Avoid : 조세회피 수준

LIT : 조세소송 표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기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3)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지배구조 더미변수(*GOV*)는 연도 및 산업의 평균 대비 대주주 지분율이 높거나, 외국인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했다. 실증분석 결과 대주주 지분율을 활용한 경우 조세소송과 지배구조 더미변수(*GOV*)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주주 지분율을 활용한 모형에서 조세소송과 지배구조 더미변수(*GOV*)의 상호작용항 또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을 경우 조세소송의 의도가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표 10>은 <표 9>와 유사하게 조세회피 정도에 따라 조세소송에 대한 기업의 의도를 가늠하고 조세소송이 신용평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10> 추가분석3 : 조세회피 정도에 따른 가설2의 추가 실증분석

Parameter	Prediction	Estimate (t Value)	Estimate (t Value)
<BAD GROUP>			
<i>Intercept</i>		3.985 (3.37)***	7.521 (4.97)***
<i>BADGETRGRP</i>	?	0.310 (2.51)**	
<i>BADGETRGRP*LIT</i>	—	−0.617 (−2.81)***	
<i>BADCETRGRP</i>	?		0.376 (2.91)***
<i>BADCETRGRP*LIT</i>	—		−0.681 (−3.31)***
<i>LIT</i>	?	0.114 (0.72)	0.144 (0.89)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N		573	573
Pseudo-R ²		0.3376	0.3636
<GOOD GROUP>			
<i>Intercept</i>		5.000 (4.17)***	7.757 (5.12)***
<i>GOODGETRGRP</i>	?	−0.757 (−5.03)***	
<i>GOODGETRGRP*LIT</i>	+	0.739 (2.89)***	
<i>GOODCETRGRP</i>	?		−0.771 (−5.07)***
<i>GOODCETRGRP*LIT</i>	+		0.833 (3.13)***
<i>LIT</i>	?	−0.350 (−2.72)***	−0.419 (−3.22)***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N		573	573
Pseudo-R ²		0.3453	0.3702

- 1) 위 표는 조세회피와 신용평점의 관계에 조세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 모형을 활용한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begin{aligned} Credit_{it} = & \alpha_0 + \alpha_1 TAX_Avoid_{it} + \alpha_2 Agrdum * TAX_Avoid_{it} + \alpha_3 Agrdum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LEV_{it} \\ & + \alpha_6 ROA_{it} + \alpha_7 Growth_{it} + \alpha_8 LOSS_{it} + \alpha_9 CFO_{it} + \Sigma YEAR + \Sigma IND + \epsilon \end{aligned} \quad (4)$$

- 2) BAD GROUP : 조세회피 상위 25% 그룹 더미, GOOD GROUP : 조세회피 하위 25% 그룹 더미
 TAX_Avoid : 조세회피 수준
 LIT : 조세소송 표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기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 3)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조세회피의 정도가 심한 기업들과 조세회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들을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하여(BADETRGRP, GOODETRGRP) 조세소송이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조세회피의 정도가 심한 기업들은 연도 및 산업의 상위 25%를 초과하는 기업들로 선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정도가 약한 기업들은 연도 및 산업의 하위 25% 미만인 기업들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세회피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 유효법인세율 모형과 현금 유효법인세율 모형에서 모두 조세소송과 유효법인세율의 상호작용항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기업들을 더미변수로 활용한 모형의 경우 두 가지 유효법인세율 모형에서 모두 조세소송과 유효법인세율의 상호작용항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조세회피의 정도가 강한 기업들은 조세전략의 의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신용평가에 대한 조세소송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조세행정소송이 부채조달의 중요한 요소인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KIS 신용평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소송과 신용평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서 조세소송과 불복청구 등을 통해 조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시도가 있고, 조세 당국이 이의 관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할 것이라는 일화적 증거가 있다. 기업들은 조세행정소송을 조세전략의 일환으로 여겨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조세행정소송을 활용했을 수 있다. 동시에, 세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자신의 권익 실현을 조세행정소송을 통해 실현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게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조세행정소송이 신용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결과 조세소송과 신용평점은 음(-)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세소송기업들은 미래 패소에 따른 현금유출액의 증가와 기업 명성의 하락, 세무당국의 감시 증가와 같은 비조세비용으로 인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논문 가설 1의 예상과 일치한다. 한편 조세행정소송의 현금흐름의 개선과 기업가치의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 또한 제시된 바,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걱정수준의 조세회피 전략을 취한 기업과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취한 기업의 효과를 비교했다. 검증 결과, 공격적인 조세회피 표본과 조세행정소송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것은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서 조세행정소송을 바라보는 신용평가사의 차별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즉,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기업들이 조세행정소송을 달리 활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은 Frank et al.(2009)의 주장처럼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강하며 이러한 현상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 걱정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은 공격적인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이나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영향이 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 논문의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자본시장 및 차입금조달의 반응을 본 여타의 선행연구와 달리 최근 복잡하고 증가하는 조세행정소송에 집중하여 차입금 조달의 중요한 요소인 신용평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했다. 주가반응을 살펴본 정재현(2011)과 달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신용평가사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조세전략 중 조세회피에서 보다 확장하여 적극적인 행위인 조세행정소송의 측면에서 앞선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권순창 등(2009)은 보고이익차이(Book-tax-difference, BTD)와 일시적 차이가 이익지속성과 이익조정 정도와 연계되어 KIS 신용평점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본 연구는 권순창 등(2009)의 연구와 달리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의 조세소송에 초점을 맞춰 신용평점에 차별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조세행정소송, 불복청구 등의 자료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활용했다. 조세소송 등의 활동은 기업에 대한 과다 혹은 부당한 징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결과 일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이 조세비용 절감을 위해 복잡한 세무 행위를 악용한 조세회피일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세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 경우 그러한 영향은 더욱 강해짐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조세 불복 및 소송 행위의 의미를 조세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소송과 불복청구 및 법인세 환급액, 추납액 자료는 그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부당한 징수에 대해 기업이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전략적 차원에서 기회

주의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세행정소송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자체가 행정소송이라는 사건보다 먼저 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소송과 불복청구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은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구분하지 못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류하여 실증한다면 추후에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정연 · 김영철. 2012.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37-67.
- 고운성 · 김지홍 ·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 9-40.
- 고종권 · 윤성수. 2006.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이익, 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지속성과 자본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27-162.
- 권순창 · 김창훈 · 김성수 · 황보영. 2009.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국제회계연구 제26집 : 189-210.
- 김응길 · 김재영 · 이만우. 2016. “조세소송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 373-403.
- 김태정 · 문남희 · 문성주. 2003. “회사채 신용등급 예측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1권 : 25-29.
- 김확열 · 최수영 · 김형석. 2014.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7권 : 99-119.
- 나 영 · 진동민. 2002. “기업어음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에 따른 비재무정보의 유용성”. 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 23-64.
- 문예영 · 전병욱 · 최보람. 2011. “세무정보가 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 245-277.
- 박연희 · 최효순 · 김한수. 2011. “재량적발생액이 회사채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0권 제4호 : 35-56.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 박종일 · 남혜정 · 최성호. 2011. “Big4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기업신용등급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275-306.
- 박종일 · 신재용. 2014. “기업소송과 자본비용 및 기업특성”. 회계학연구 제39권 제4호 : 251-304.
- 박종일 · 지승민. 2016. “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 여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가?”. 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 55-97.
- 이광숙 · 기은선. 2016.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 -조세회피가 자본비용, 매출, 신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1권 4호 : 1-40
- 이병산 · 정재현. 2008.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른 시장반응”. 세무학연구 제25권 제1호 : 139-168.
- 전성일 · 이기세. 2010.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KIS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30집 : 245-263.
- 정운오 · 전병욱. 2010. “세무조사와 주가반응”,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 179-203.

- 정재현. 2011. “조세소송에 따른 주식시장반응”. 조세연구 제11권 제2호 : 140-167.
- 정현욱 · 변선영. 2016. “조세혜택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 9-34.
- 조은혜. 2016. “내부자거래가 기업신용등급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5호 : 33-65.
- 조현우 · 박연희. 2006. “사외이사의 특성과 감사품질이 이익조정과 KIS 신용평점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3호 : 141-171.
- Ashbaugh-Skaife, H., D. W. Collins, and R. LaFond. 2006.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f firms' credit rat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 (1-2) : 203-243.
- Badertscher, B., J. Phillips, M. Pincus and S. Rego. 2009.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trade-off between tax benefits and detection risk : To conform or not to conform? *The Accounting Review* 84 (1) : 63-97.
- Baker, H. K., & Mansi, S. A. 2002. Assessing credit rating agencies by bond issue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29 (9-10) : 1367-1398.
- Balakrishnan, K., J. Blouin, and W. Guay. 2011. Does Tax Aggressiveness Reduce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hagat, S., Brickley, J. A., & Coles, J. L. 1994. The costs of inefficient bargaining and financial distress : Evidence from corporate lawsui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5 (2) : 221-247.
- Crabtree, A., and J. Maher. 2009. The influence of differences in taxable income and book income on the bond credit marke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1 : 75-99.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2) : 193-225.
-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 Desai, M. and D. Dharmapala.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 (3) : 537-546.
- Dhaliwal, Dan S. and Huang, Shawn X. and Moser, William and Pereira, Raynolde.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Level and Valuation of Firm Cash Holdings
- Dyreng, S., M. Hanlon and E. Maydew. 2008.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 : 61-82.

- Edwards, A., C. Schwab, and T. Shevlin. 2013.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incentive for tax planning. *Working paper*. University fo Toronto, University of Georgia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 Francis, J., K. Schipper, and L. Vincent. 2005. Earnings and dividend informativeness when cash flow rights are separated from voting righ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2) : 329–360.
- Frank, M., L. Lynch and S. Reg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 : 467–496.
- Graham, J. and A. L.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 563–594.
- Graham, J. R., M. Hanlon, T. Shevlin, and N. Shroff. 2014. Incentives for tax planning and avoidance : Evidence from the field. *The Accounting Review* 89 (3) : 991–1023.
- Guenther, D., S. Matsunaga, and B. Williams. 2013. Tax avoidance, tax aggressiveness, tax risk and firm risk. University of Oregon. Working paper.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 : 137–166.
- Hanlon, M. and J. Slemrod. 2009. What does Tax Aggressiveness Signal?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 to News about Tax Shelter Involv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 126–141.
- Kaplan, R. and G. Urwitz, 1979, Statistical Models of Bond Ratings : 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Business* 52 (2) : 231–261.
- Kim, J. B., O. Li., and Y. Li. 2010. Corporate tax avoidance and bank loan contract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Arizona.
- Kim, J., Y. Li. and L. Zhang.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 Firm–leve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0 : 639–662.
- Lim, Y. D., 2011. Tax avoidance, cost of debt and shareholder activism :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5 : 456–470.
- Mills, L. F., 1998. Book–tax differenc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 : 343–356.
- Mills, L. F., and Sansing, R. C. 2000. Strategic Tax and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7 (1) : 85–106.
- Prevost, A. K., and C. J. Skousen. 2008. Earnings management and the cost of debt. Working paper, Ohio University.

The Impact of Corporate Tax Lawsuits on Credit Rating

Jae-Young Kim* · Eung-Gil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tax lawsuits and credit rating. Further by comparing the firms engaging in aggressive tax avoidance with those not, we test whether the degree of tax avoidance has different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tax lawsuits and corporate credit rating.

Credit rating, provided by a credit rating agency, represents the agency's opinion on the future credit risk of a debt or financial obligation using a ranking system. The credit rating provided by the rating agencies are utilized by market participants as an indicator for assessing firm's current and future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we feel that it would be interesting to understan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ax avoidance activity and the corporate credit rating.

We approach the tax lawsuits as one of the corporate tax decisions. If tax lawsuit is used a method of tax avoidance, it may decrease the quality of earnings and deteriorate the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Given that debt holders have strong interest in the fixed claimants, their interest to the result of tax lawsuit would be more on the risk aspect rather than cash savings effect. Therefore, tax litigation may act negatively to credit ratings.

For this paper, our test use collected sample of nearly 191 firm year of Korea publicly traded firms in the period 2001–2014. We find that tax lawsuit and credit rating have negative association with significance. Further, we have tested whether the magnitude of the tax avoidance has different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tax lawsuits and credit rating. The result shows that firms that engage in tax aggressiveness display a stronger negative association on the credit rating.

〈Key words〉 Tax lawsuit, Tax avoidance, Credit score, Credit rating

* Ph.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Korea University, jenjykim@korea.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oong-Sil University, egilkim@ssu.ac.kr, Corresponding Author